

최신 판례 예규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사전법령부가-308, 2020.05.18

■ 질 의

-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부킹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 주는 경우
- (질의1)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사업자가 회원의 골프장시설 사용에 따른 대가를 골프장사업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하여 예약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하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명의로 골프장을 예약하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 중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골프장 예약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법인의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2925, 2020.04.20

■ 질 의

-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2개의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인건비는 고용계약서상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반영함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2870, 2020.04.20

질 의

-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인건비에 비해 과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대표이사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겸임하고 있는 각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규모, 근무일수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신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전법령소득-510, 2020.05.21

질 의

- 질의법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왔으나
- 최근 과거 3년간의 미지급한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면서
-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과소납부한 세액을 납부함

질 의

- 위 사실관계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회 신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 5.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5.13.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